◉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-97호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2년 11월 09일

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행정처분 공고

1. 처분대상

업종 (허가번호)	업체명	대표자	소재지
수입식품등 수입·판매업 (제20070592351호)	케이엔씨통상	윤*현	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70, 비콘드림시티오피스텔 1001호

2. 처분사항

○ **영업등록 취소(2022. 12. 7.일자)**

3. 처분사유

○ 수입식품등 수입·판매업 영업자는 중요한 사항(영업소의 소재지)을 변경할 때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나,

- 상기 당사자는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으며, 현재 영업소의 소재지에 영업시설이 일체 없음

※ 해당 업소 소재지에는 영업시설이 일체 없음을 확인함 (점검일: 2022. 7. 29.)

4. 근거법령

○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제14조, 제15조 1항

○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[별표13] 행정처분의 기준 Ⅱ.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)

5.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*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, 온라인 행정심판(www.simpan.go.kr)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○ 문의처 :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정은서 02-2640-1320